

6. 유료 주차장

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단지 내에는 유료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

(1) 유료 주차장 이용 신청

단지 내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차장 이용 신청 서류를 주거센터 등 또는 관리서비스 사무소에 제출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

① 신청 자격

UR임대주택을 계약하신 분(법인 계약의 경우는 해당 계약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여받은 분도 가능)

※UR임대주택의 임차료 등을 체납하는 등의 사유로 UR도시기구(채권승계자 포함)에 미납금이 있는 분 및 동거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② 주차 가능 차량

계약 차량은 다음 (가)~(다)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(가) 유효기간 내 차량검사증(자동차 검사증 또는 경자동차 신고필증)이 있는 자동차

(나) 차량의 중량 및 치수가 당해 주차장의 제한 범위 이내인 것

(다) 입주자 및 동거인이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자동차

(법인 명의의 차량 등은 계약 시 별도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)

③ 사용 가능 대수

1세대당 1대를 원칙으로 합니다.

일부 단지에서는 특례로 1세대당 2대 이상의 주차장 계약도 가능하지만, 주차 공간이 부족해진 시점에 2대째 이후의 주차장 계약은 해약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④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

(가) 유료 주차장 이용신청서

(나) 유효기간 내 자동차 검사증 기록사항 장표 사본[전자 차량검사증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는 차량검사증(자동차 검사증 또는 경자동차 신고필증) 사본]

※구입 예정인 분은 크기 · 중량 등을 알 수 있는 자료

그 외 필요에 따라 서류 제시 ·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(2) 계약 시 수속

신청 접수 후, 입고 가능 여부를 비롯해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.

계약 체결 시까지 임차보증금 및 이용 개시월의 일할 이용요금, 보증금(자동게이트 설치 단지 및 일부 타워식 주차장의 경우)을 UR도시기구 발행 납부표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 창구에서 납부해야 합니다.

○ 계약 시 필요한 서류 등

(가) 주차장 계약 예정자의 인감(원칙적으로 도시기구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에 사용한 도장)

(나) 임차보증금 및 일할 이용요금, 보증금 납부표 사본(영수인이 찍힌 것)

(다) 본인 확인 서류(면허증 등)

그 외 필요에 따라 서류 제시 ·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(3) 감액 조치 등

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(해당 주택에 동거하는 친족 포함)에 대해 이용요금 감액 조치 및 위치 우대 제도가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주거센터 등에 문의하십시오.

(가) 신체장애인 수첩을 교부받은 1급부터 4급의 장애가 있는 분

(단, 하지 및 체간 장애가 5급이고 주거센터 소장 등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포함)

(나)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을 교부받은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상시 개호가 필요한 분

(다) 요육수첩을 교부받은 중증 장애인으로 상시 개호가 필요한 분

(라) 아동상담소, 지적장애인 갱생상담소 또는 정신과 의사 등으로부터 중증 지적장애 또는 이와 동일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고 판정받은 분으로 상시 개호가 필요한 분

(마) 요개호인정을 받은 요개호도가 1부터 5인 분

이용요금 감액 조치를 받는 경우는 상기 (가)~(마)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동시에, 가구 구성원 전원의 월 소득 합산액이 15만 8천 엔 이하이어야 합니다.

(4) 기계식 주차장

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께

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소정의 사용 방법을 준수하고, 특히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.

- 기계식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할 때는 운전자 외에는 주차장 안에 들어가지 마십시오.
- 자동차 안에 사람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차 장치를 조작할 때는 기계식 주차장 안에 사람이 없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 조작하십시오.
- 주차 장치 조작 중에는 장치를 떠나지 말고, 어린이가 주차장 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.
- 주차 장치의 조작 버튼에 기구 등을 고정하여 계속 눌린 상태로 두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.



위험

자동차 입출고 외의 목적으로는 기계식 주차장 내부에 절대 출입하지 마십시오.



(5) 기타

- 주차장 이용 개시 가능일은 주택 입주 개시 가능일 이후입니다. (입주 개시 가능일 이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)
- 차량을 구입할 때 필요한 보관장소 사용승낙 증명서(차고증명)는 주차장 이용 가능일 이후에 관할 주거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계약 다음달부터의 매월 이용요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로 납부해야 합니다.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과 마찬가지로 UR도시기구 지정 금융기관 창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공사 등으로 인해 계약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